

서·울大學校教育機構改編의 方向과 高等教育關係法令의 分析

趙錫俊
(教授)

I. 序論

1. 研究目的

本研究의動機는 다음과 같다. 서울大學校는解放後國立서울大學校로出發하기 위하여舊京城帝國大學을中樞로하여各種의官立專門學校들을吸收統合하는教育機構改編을한以後에는 이를다시綜合的體系的으로再編成하는努力은하지않았다.

그리던중分散된各Campus의現位置로의統合을앞두고비로소大規模의綜合的體系的改編試案이作成되었으며, 그중의相當한部分은이미實踐되었으나, 또많은部分은實踐에옮기지못하고있다. 그리고前者의경우에도그實踐은매우不自然스러운制度的뒷받침위에서있어서그의將來를豫測하기困難하다.

筆者는이改革過程에깊숙히關聯되어있었는데, 試案의作成이나推進過程에서恒常化된問題으로提起된것으로現行教育關係法令의條文이改革을가로막고있었다는것이다.

勿論改革集中에서實踐된것들중에는關係條文을修正하여서이루어진것도있지만, 그것도이法令들의根本的인全體的檢討위에立脚한것이아니고, 오히려臨時方便의이며,斷片的修正에依頼으로法案全體로서의統一性이缺如된狀態로버려진채로있다.

이에筆者는關係法令들의어떤條文들이어떻게修正되어야여러가지의改革案들이實踐될수있겠는가를全般的으로研究해야할必要성을切感하게되었다.

이들法令는다全國的으로모든教育機關,高等教育機關,國立學校등을規制하고있으며,또서울大學校가차지하는莫重한位置로보아, 이런種類의研究는매우important한意義를갖는다고할수있다.

2. 研究方法

서울大學校의教育機構改編案들이韓國大學 또는서울大學校의教育을어떻게認識했으

며, 그런 認識에 立脚하여 어떤 主張들이 있었으며, 그런 主張을 實踐하려면 어떤 法令의 어떤 條文이 어떻게 變更되어야 하겠는가를 檢討하는 順序를 撇하기로 한다.

本研究는 筆者의 改革案導出過程에 있어서의 諸經驗과, 서울大學校의 各種의 教育機構改編關係報名書와 教育關係의 比較的 重要한 現行法令들을 그 資料로 使用하였다.

그러나 國內外를 莫論하고 大學에 대한 研究結果는 많지 않다. 一般的으로 이 分野는 社會的으로나 政策的으로는 많은 關心의 對象이 되면서도, 反面에 가장 學術文獻이 貧困한 領域으로 간주되고 있다.⁽¹⁾

政治學者들은 Power 現象이나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 現象을 社會나 政府 속에 서는 求하였어도, 大學과 政府 또는 大學과 社會間關係를 이런 見地에서 研究한 일이 적다. 아마 大學이란 自治와 自律의 世界로 간주되고, 따라서 政治現象이나 社會現象으로부터 超然한 象牙塔이라는 觀念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政治學은 또한 大學內部의 統治方法에 대해서도 이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안다.

敎育學은 그것이 갖고 있는 Teacher's College의 傳統때문에 大學에 대하여 相對的으로 적은 關心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行政學者들도 大學에 관한 많은 研究를 한 것은 아니다⁽²⁾ 能能과 經濟性 또는 合理性의 見地에서 볼 때 大學行政이야 말로 가장 落後된 領域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不拘하고 大學社會內에서는 이것이 當然한 것 같이 取扱되거나, 또는 緋念狀態에 빠져지는 일이 많다. 後者の 動機例로 上部에 忠誠만 잘하는 시시한 學者가 높은 行政補職에 앉을 때에, 아예 그에 대해서 無關心 하려는 教授社會의 風潮를 들 수 있다.

以上의 모든 것 외에도 大學教授라는 것이 自己의 專攻別로 分化되어 있고, 또 大學은 어느 教授나 다 너무도 잘 아는 社會이기 때문에, 特別히 研究할 價值가 적다고 생각하는一般的의 思考方式에서 由來하였는지 모른다.

三. 範 圍

이 論文에서 對象으로 하는 法令은 다음과 같다.

敎育法(1974. 12. 24改正, 法律2710號)

敎育法施行令(1975. 1. 27改正, 大統領令第7536號)

國立學校設置令(1975. 2. 28改正, 大統領令第7566號)

國立學校設置令施行細則(1969. 7. 19 文教部令第217號)

(1) cf. Clyde J. Wingfield, "The University and Stat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0, No. 2 (Mar./April 1970) p.100.

(2) 그러나 美國行政學會는 大學行政에 관한 PAR Symposium을 1959—60의 Winter Issue에서 "Administration in the Hall of Ivy"라는 題目으로 取扱했고, 1970의 March/April Issue에서 "The American University:A Public Administration Perspective"라는 題目으로 다루었다. cf.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Ibid., pp.65-128, 그리고 韓國行政學會는 1971年에 "敎育政策의 決定에 관한 세미나"를 하고, 權寧贊교수가 大學의 問題를 다루었다. 韓國行政學報, 第5號(1971) pp.9-67

서울大學設置令(1975. 2. 28改正, 大統領令第7565號)

大學院規程(1953. 10. 20, 文教部訓令第8號)

教育公務員法(1973. 2. 22改正, 法律第2546號)

教育公務員任用令(1973. 6. 14改正, 大統領令第6731號)

또한 本研究는 서울大學校의 많은 教育機構改編案中에서도 綜合「캠퍼스」의 位置가 冠岳山으로 確定된 뒤에 「서울大學校施設擴充特別會計法」이 公布되고(1968. 7. 19), 그 以後에 發表된 1970年10月의 「서울大學校企劃委員會 教育研究 및 機構組織分科委員會」의 第1次報告書以後의 案들만 對象으로 한다.

이 報告書以後에도 여러가지 案이 發表된 일이 있었으나, 이들은 實際 採擇되지 못하였다. 또 이 報告書 以後에 4個의 類似한 報告書가 나왔는데 이들은 全部 本研究의 對象이 된다.

II. 韓國大學組織의 特性과 關係法令

1. 序 言

어떤 組織이든 그것이 追從 또는 模倣하려는 image model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Model은 自己가 創製할수도 있지만 他組織을 reference로 하여, 그로부터 찾아 내는 일도 많다.

특히 韓國과 같은 發展途上의 國家에 있어서는 이런 image model을 他先進國의 類似組織으로부터 찾는 일이 많다.

大學의 경우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며, 韓國의 大學들은 大體的으로 日本型과 美國型을 그 image model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歷史的인 採擇順序를 보면 우리는 日政治下에서 日本型을 他意에 의하여 받았고, 그런 教育을 받은 現5代 以上的 者들이 解放後 오늘날까지 大學內의 重要한 地位에 있거나, 있었다. 따라서 大韓民國政府樹立以後의 大學의 組織이라는 것은 그 image model을 日本에서 求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解放後의 美國의 思潮流入으로 인하여 이런 思考方式을 代表하는 世代의 大學組織에 대한 image model은 美國型이었으며, 主로 解放後 美國教育을 받고 歸國한 者들은 아직도 大學內의 支配的인 力量으로 登場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한쪽으로는 政策當局인 政府의 高位層도 日本式大學教育을 받은 者들이 政府樹立直後에 主된 影響力を行使했으며, 이들이 採擇한 教育關係의 各種 基本法令들은 日本의 그것을 模倣한 것이 그 根幹을 이루고 있다.

2. 日本型과 美國型의 特徵

(1) 大學과 大學院, 博士의 概念

가. 序

日本式의 大學教育은 基本的으로 學士課程에서 끝나는 것이고, 大學院은例外적인 것이다. 大學院은 極히 少數의 學者를 養成하기 위한 存在에 지나지 않는다. 이 思考方式에 의하면 大學=學士課程이다.

反對로 美國式의 思考方式에 의하면 大學院은 大學의 不可分의 一部이며, 高度의 專門家 및 研究者를 養成하는 課程이다. 따라서 大學院은 社會各方面의 職業專門家를 배출해야 하며, 學者로 나갈 사람은 獨立된 研究能力을 賦與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美國式의 思考方式은 大學=學士課程+大學院課程이라고 생각한다. 博士學位의 概念에 있어서도 美國에서는 하나의 研究者로의 獨立된 研究能力을 認定하는 資格證에 지나지 않는데 대하여, 日本式의 概念은 學問의 完成 또는 大成을 意味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以上과 같은 差異는 우리나라의 大學概念, 學士課程 對 大學院의 比重의 問題, 大學院課程의 軍管方法, 博士學位의 轉出量等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은勿論이다.

나. 制制의 特徵

大學=學士課程이라는 日本型의 觀念이 우리나라의 教育關係重要法令의 根幹이 되고 있다. 이제 그 内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教育法은 第5節에서 「大學」이라는 節名을 쓰고 있으며, 同節속에서는 大學院까지 言及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一見 大學이란 大學院까지 包含하는 것같이 보이나, 實際拘束力이 있는 각條에 드러가서는 大學이란 大學院이 아닌 것으로 使用하고 있다.

敎育法의 第108條에서 第117條까지에서 使用된 類似用語는 대학, 대학(단과), 대학교(종합), 단과대학의 네 가지이다. 第109條는 「大學은 初級大學, 大學(單科)과 大學校(綜合)의 3種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大學(單科)은 綜合大學으로의 昇格이 되지 않은 大學을 말한다. 綜合大學內의 大學에 대해서는 單科大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大學校라는 것은 이런 單科大學 3個以上과 大學院으로 構成된다고 하고, 大學(單科)도 大學院을 둘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大學(單科)에 대해서는 「單科大學에도 大學院을 둘 수 있다(第10條2項)고 하여 名稱에 一貫性이 없으며, 따라서 大學校內의 單科大學과 獨立된 單科大學는 名稱上混同하고 있다.

아무나 그것이 綜合大學校內의 單科大學이든 또는 單獨의 單科大學이든, 그것과 大學院을 전혀 別個의 것으로 생각하는 思考方式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學士課程까지가 單科大學이고, 그以後의 課程은 大學院이라고 보고 있다.

이리하여 學士課程教育을 맡는 大學長이 있고, 大學院課程을 맡는 大學院長이 있으며, 이兩者間에는 獨立된 大學(單科)이 아닌 以上, 相互 아무런 關聯이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

敎育法 第109條의 2는 「大學, 敎育大學, 師範大學과 大學院의 學生定員에 관하여는 大統領命令으로 定한다」라고 하여 大學과 大學院은 學生도 각각 따로 갖게 되어 있다.

또 同法 第110條1項의 2의 「大學 4年 乃至 6年」이라고 한 것은 앞에 말한 第109條의 大學은 初級大學, 大學(單科)과 大學校(綜合)의 3種으로 한다는 規程과도 一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2의 大學은明白히 初級大學을 除外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大學과 大學院을 別個로 取扱하는 것은 각各 教員의 配置에 대한 規程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即 教育法施行令 第45條는 「大學校, 大學과 大學院에는 總長, 副總長, 學長, 大學院長과 處長外에 學科마다 專任講師以上의 教員을 9人以上 配置하되」라고 하여, 大學院에도 學科를 두고 이에 教員들을 配置하게 하여 놓고 있다.

教育法 第113條는 「大學에는 研究所 其他 研究施設을 附設할 수 있다」고 하여 大學院이 아닌 大學에 관 研究施設을 둘 수 있게 하는 奇異한 規程을 두고 있다. 即 大學院에는 研究所를 두지 不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同114條의 公開講座나 聽講生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此의 「大學」을 어떤 意味로 해석하던 그것은 單科大學이거나 大學校이기 때문에 研究所는 單科大學(獨立單大包含)이나 大學校의 長밀에만 두게 되는 것이다.

以上 教育去이나 同施行令이 大學과 大學院은 그 學生, 教員等을 別個로 갖는 것으로 取扱하고, 研究所는 大學만이 갖도록 하여 日本型의 大學觀念을 代辯하고 있음이 틀림 없다.

博士의 概念에 있어서도 教育法施行令은 日本型을 擇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教育法施行令은 博士學位의 莊出을 위해서는 論文審查에 5人以上의 委員이 必要할 뿐만 아니라, 이에 追加하여 大學院委員會의 委員의 三分의 二 以上의 贊成을 必要로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同129條와 132條).

그런데 이 大學院委員會라는 것은 大學校마다 1個밖에 없으며, 各校의 細分된 學問分野別로 提出되는 學位論文을 大學院委員會에서 議決한다는 것은 그 實效가 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런 追加制動裝置를 둔 것은 博士學位의 莊出을 어렵게 하려는 意圖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博士學位論文은 1年以内에 그 授位者가 公表하게 되어 있다.(教育法施行令136條)換言하면 公表의 價值가 없는 것은 博士學位의 價值도 없다고 보는 態度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博士學位의 莊出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意圖를 볼 수 있다. 美國의 경우에는 博士學位論文의 公表는 極히 少數의 경우에 限하며, 그것도 提出者の 義務로서가 아니라, 學界的 市場的 要求에 의하여 되는 것임으로 매우 名譽스러운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以上 두가지 점은 美國에서는 實施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며, 그 意圖는 함께 博士學位의 授與를 어렵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意圖의 배후에는 博士學位란 學問의 大成을 意味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思考方式이 있다고 할 수 있다. 萬一 博士學位가 獨立된 研究能力의 資格證에 지나지 않는다면, 學位論文에 뜻지 않게 그에 이르기까지의 教

育過程[1]重視되어야 하는 것이다.

(2) 閉鎖對開放

가. 대

大學[1] Operation Mode에 있어서 閉鎖型은 다음과 같다. 學生의 flow에 있어서 어떤 特定學科[1]學士課程에 入學하면 四年間 同一學科를 다녀서 卒業하며, 어떤 學科의 碩士, 博士課程[1]의 入學도 該當學科出身만이 進學할 수 있다.

學生[1]在學中の 學點取得 flow를 보면 自己가 所屬한 學科와 學位課程의 學點만 取得한다. 換言하면 他學科科目을 取得할 수 없고, 他學位課程의 學點을 取得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開放型은 相異한 學科의 上級學位課程에 드러갈 수 있고, 相異한 學科나 學位課程[1] 學點을 取得할 수 있다. 日本模型은 閉鎖型에 立脚하여 있고, 美國模型은 開放型에 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學生이 學士課程에 入學할 때에는 一學年부터 自己의 學科를 定하고, 卒業할 때까지 同一學科의 教科目을 受講하도록 되어 있고, 碩士, 博士課程에의 進學도 같은 學科로만 가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副專攻도 없고, 他科로 所屬을 옮길수도 없고, 他系列의 學科에 進學할 수도 없고, 學士, 碩士, 博士課程間에 教科課程의 統一性도 없고, 入學試驗도 學位課程마다 各各 獨立하여 있고, 相互間의 學點의 交流도 없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極히 閉鎖의 型에 속한다. 部分的으로 이런 閉鎖性을 깨트린 것은 專門大學院들의 入學志願資格開放이였다.

나. 法制의 特徵

教育法施行令은 同 119條에서 副專攻制를, 그리고 120條에서 能力別卒業制를 擇하고 있으며, 大學院規程의 13條는 大學院과 學士課程의 合同授業에 관한 것을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學生의 入學, 轉科, 轉學等은 大學當局의 學則속에서 規定하도록 委任하고 있는 것이 教育法과 同施行令의 趣旨인 것으로 解釋한다.

따라서 大學의 閉鎖的 운영은 大體的으로 大學當局의 責任에 归하는 것으로 解釋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同種系統의 學科에 屬하는 上級學位課程에만 進學이 許容되는 것은 直接 間接으로 關係法規體系의 產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두드러진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大學院規程 5條1項은 「大學院의 課程에 두는 學科는 그 大學校 또는 大學에 設置된 學科種類에 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規程은 大學院의 專科라는 것은 한 大學校內에서는 學士課程이 있는 學科가 基盤이 되어 그위에 設置된다는 思考方式을 代辯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多學問的分野에서 大學院課程에서부터

처음 始作하는 새로운 分野는 전혀 學科로 設置할 수 없음을 是認하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경우 乃是 行政學, 經營學, 圖書館學, 社會事業學, 看護學等은 全部 大學院 課程의 総合學問分野로 되고 있으며, 따라서 學士課程의 學科가 없이 大學院의 學科가 設置되고 있는 것이다.

出發을 美國에 둔 이런 諸學問分野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學士課程의 學科로부터 始作하게 된 것은 앞에서 言及한 大學의 學士課程為主의 觀念과, 本規程과 같은 學士課程에 뿐만 아니라 大學院의 學科를 禁止하는 措置 때문이였다.

또한 이 規定은 大學院의 學科는 學士課程의 同一學科出身을 받아 드린다는 것을 시사하고 認定하나·條文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大學院規程第6條는 「大學院의 學生定員은 大學學生定員令第2條의 定員을 超過할 수 없다」고 하여 大學院의 定員을 이를 獨自的으로 社會的, 學問的需要等에 비추어서 算出하지 않고, 學士課程의 定員에 의하여 左右되도록 만들어 좋았다.

이 規定 乃是 學士課程為主의 思考方式의 產物인 것 外에도, 한 學科의 立場에서 보면 學士課程의 學生이 基盤 또는 源泉이 되어서, 大學院의 該當 學科의 志願生이 決定된다는 思考方式을 間接的으로 代辦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大學院의 特定學科의 學生이란 學士課程의 同一學科의 出身이어야 한다는 것을 暗示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같은 大學院規程第15條에 의하면 大學院의 編入學, 轉入學 또는 轉科는 學生이 碩士課程이나 博士課程에 在學하는 동안은 이를 禁하고 있다. 이것이 許容되는 時期는 碩士課程을 修了하고 博士課程에 志願할 때이다. 그러나 이 때에도 同種系統의 學科나 專攻에 限定하도록 되어 있다.

(3) 講座制와 教室制

가. 序

講座制라는 것은 歐羅巴의 學制를 이어 받은 日本型의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 大學組織에 있어서 基本單位인 學科속을 다시 專攻別로 分化시켜 이를 講座 또는 教室이라 指摘하고, 이에 責任教授를 두고, 그 밑에 副教授, 助教授, 助教等을 所屬시키고, 實驗室, 經費執行等도 獨立的으로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는 매우 階序秩序置重主義의이며, 또한 學科에 對하나 獨立의이며, 恒久的인 體制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이 使用되는 學科內의 專攻制도 講座教室制의 變形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美國式의 模型은 學科內에서 다른 公式的인 階序秩序를 認定하지 않으며, 學科長에게 그 學科운영의 모든 責任이 주어지게 된다.⁽³⁾ 따라서 學科內의 有無相通이나 學科의 全體的成長이라는 立場에서는 學科長에게 強力한 權限을 주는 美國式이 有利한 것이

(3) Jeffrey Pfeffer and Gerald R. Salanik, "Organizational Decision Making as a Political Process: The Case of a University Budge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19, No. 2, pp.135-151.

다. 講座 또는 教室制는 醫學系의 大學內에서 오늘날 많이 使用되고 있다. 恒言하면 醫科大學內에 有는 醫學科라는 것은 아무 意味도 없으며, 各教室이 마치 學科와 같은 構造를 갖고 있다.

나. 法制의 特徵

國立學立設置令施行細則의 第5條, 第6條, 第7條, 第8條, 第9條, 第10條, 第11條, 第12條, 第13條, 第14條等은 全部 이 講座制度를 뒷받침하기 위한 根據規定이다. 따라서 同細則이 全的으로 日本型의 大學組織을 前提로 한 것은 틀림 없다고 할 수 있다.

(4) 教授의 供給

가. 序

日本式의 大學院教育은 首弟子 또는 徒弟教育이며, 修業中에 맺은 강인한 人的 유대를 基礎로 하여, 스승은 弟子의 將來까지 어느 정도의 道義的 責任을 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血脈, 學閥脈에 의하여 教授의 Mobility가 學校間에 從의으로 決定되는 傾向이 있는 데 대하여, 美國式 模型은 公開, 業績, 物的誘因等에 의하여 教授의 Mobility가 學校間에 流動的으로 決定되는 傾向이 있다.

韓國의 大學教授의 採用과 升進을 보면 基本的인 模型은 日本模型에 立脚하고 있다. 即自己의 首弟子를 助教로 쓰고, 時間講師로 發令하고, 他校에 보냈다가 專任으로 끌어 오며, 自己出身大學學科의 스승을 通해서 같은 大學 學科出身끼리 한大學에 集結하는 型態의 流動性을 갖고 있다. 往往히 한 學科內의支配者는 이런 의미의 Boss가 된다.

나. 法制의 特徵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關係法規가 同一系學科의 學士課程에서 碩士課程으로, 또 同一系學科의 碩士課程에서 博士課程으로 學生이 進學토록 되어 있고, 大學院課程의 學生定員은 學士課程의 그것에 比하여 적으며, 講座, 教室 또는 專攻內에는 教授들의 嚴格한 階序制가 있게 되어 놓았다는 것은, 벌써 日本의 教授 流動構造를前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教育法 第75條의 2號와 教育公務員法第2條의 1號에 의하여 助教는 教育公務員으로 認定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助教는 大學院在學生中에서 發令될 수 없으며, 또 그 發令手續이 번잡하며 一旦 發令을 받으면 身分이 保障되게 되어 있다. 흔히 助教가 專任講師를 위한 過程로 解釋되고, 따라서 教授가 助教의 將來身上에 대하여 道義的 責任을 지게 되는 것도 이로 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教育施設의 活用과 Continuing Education, 夜間教育, 季節授業

가. 亭

日本型의 思考方式에 依하면 大學은 그의 純粹性을 지키려면, 傳統的인 基本學問이 그核心體이며, 應用分野의 그것은 醫學, 法學을 除外하고는 이를 過히 重要視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美國型의 그것은 以上과 같은 分野의 學問以外에도 大學은 社會的 需要에

敏感하게 應하기 위하여 各種의 應用 또는 職業學問分野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社會的 需要와充足의 一環으로 大學의 施設은 이를 可能한限, 最大限으로 活用하여야 한다는 것이 美國式의 思考方式이다. 그리하여 大學에서는 書間 뿐만 아니라 夜間에도 授業을 하여야 하며, 放學동안에는 施設을 놀리지 않기 위하여 季節授業을 하여야 한다.

또한 教育이란 一生을 通한 事業이며, 大學은 그의 正常 Program以外에도 Continuing Education의 欲求를 充足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大學은 上記한 季節授業, 夜間授業을 活用하고 公開講義, 通信講義等을 하게 된다.

나. 法制의 特徵

現在의 教育關係의 法令들은 以上의 諸制度를 大學이 使用할 수 있는 制度的裝置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制度들을 活用할 責任은 大學當局의 責任에 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勿論 實際로 一部에 있어서는 夜間授業, 季節授業, 公開講座, 研究生, 放送通信大學 等이 活用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더욱 廣範圍하게 使用되지 못하는 것은 主로 大學當局의 고루한 思考方式에 연유하거나, 政策當局의 行政的 統制에 基因한다고 볼수 있다.

다만 季節授業, 公開講座等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좀더 積極的으로 活用되게 하려면, 이에 一助가 될 制度上의 修正으로서, 教授의 責任時間 9時間을 週當으로 計算하지 말고, 年間으로 計算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고, 季節授業이나 公開講座等도 이 時間に 算入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III. 서울大學校 Academic Plan 諸報告書의 内容 分析

1. 序

서울大學校의 10個年綜合化計劃을 推進하기 위하여 同校에 企劃委員會가 創設된 以後 同企劃委員會內에는 教育機構組織分科委員會와 施設分科委員會의 두 分科委員會가 設置되었다.

그 中에서 教育機構分科委員會는 70年10月에 第1次報告書, 71年2月에 第2次報告書를 提出하였다. 그후에 이 報告書에 대한 修正案을 作成하기 위하여 構成된 小委員會가 71年9月에 報告書를 提出하였고, 企劃委員會는 以上을 감안하여 71年12月에 報告書를 提出하였고, 73年9月에는 서울大學校의 最終報告書가 마련되었다.⁽⁴⁾

(4) 이들 報告書의 名稱은 다음과 같다. 서울大學校企劃委員會教育研究 및 機構組織分科委員會, 서울大學校企劃委員會教育研究 및 機構組織分科委員會第1次報告書, 1970.10., 서울大學校企劃委員會, 教育研究 및 機構組織分科委員會, 서울大學校企劃委員會教育研究 및 機構組織分科委員會研究報告書, 1971.2., 서울大學校企劃委員會 教育研究 및 機構組織分科委員會小委員會, 서울大學校企劃委員會教育研究 및 機構組織分科委員會小委員會研究報告書, 1971.9. 서울大學校企劃委員會, 教育研究 및 機構組織에 관한 研究報告書, 1971.12. 서울大學校, 서울大學校綜合化教育機構 및 運營計劃(案), 1973.9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大學校의 大學院이 主管이 되어서 1971年과 1972年的兩次에 걸쳐서 大學院教育改革에 관한 報告書가 提出되었었다.⁽⁵⁾

서울大學校는 그후 上記企劃委員會 또는 大學本部主管下의 諸報告書의 內容을 推進하기 위하여 1973年11月에 政府에 서울大學校法等을 提出한바 있고, 그것의 實現이 不可能하다는 判斷下에 1975年2月28日에 서울大學校設置令을 改正하여, 報告書의 一部 內容을 實踐에 옮기게 되었었다.

以下에서는 上記 5個報告書와 大學院에 관한 兩報告書를 中心으로 그 內容을 要約하여 檢討하는]로 한다.

2. 서울大學校教育機構改編研究報告書 比較分析

下記 5個報告書의 內容을 要約하여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5) 서울大學校大學院, 大學院教育의 強化策研究, 1971, 서울大學校大學院, 大學院教育運營改善에 關한 研究, 1972)

內容	第1次報告書(教育分委) (70.10)	第2次報告書(教育分委) (71.2)	小委員會修正報告書 (71.9)	企劃委員會報告書 (71.12)	最終報告書 (73.9)
一. 教育機構 자. 教育機構 編成原則					
1. 二元的 機構組織 基本科學과 專門學問領域 域을併用	1. 左同	1. 左同	1. 左同	1. 左同	1. 左同
2. 教授과 統合 교수는 基本科學別 組織과 專門領域別 組織 에 따라 統合	2. 左同	2. 左同	2. 左同	2. 左同	2. 左同
3. 大學教育과 大學院 教育 의 連繫 大學院은 學問系別 및 門大學別로 大學部 教育 의 연장	3. 左同	3. 左同	3. 左同	3. 左同	3. 左同
4. 學科組織의 細分化止揚 大學部水準의 教育은 廣 域的 分類에 依한 組織 5. 基本科學 分類基準 1) 傳統의 基礎學問 領 域을 尊重 2) 相互獨立性의 認定되 立 重複性排除	4. 左同	4. 左同	4. 左同	4. 左同	4. 左同
3) 數個學科 下位構造에 包含				3) 數個學科 下位構造에 包含	3) 數個學科 下位構造에 包含
6. 專門領域 分類基準 1) 社會의 需要是 基準으로 한 領域別 規模의	6. 左同	6. 左同	6. 左同	6. 左同	6. 左同

내 容	第 1 次報告書(教育分委) (70.10)	第 2 次報告書(教育分委) (71.2)	小委員會修正報告書 (71.9)	企劃委員會報告書 (71.12)	最 終 報 告 書 (73.9)
	適合性				
2) 特殊성 專門領域으로 認定된 獨立性					
3) 서울大學 以外 他大學 과의 补完關係考慮					
7. 教育年限의 多樣化	7. 左同				
1) 教育年限→4~6年間 2) 始發學年→1學年 王는 3學年	7. 教育年限의 多樣화 1) 教育年限→4~6年間 2) 始發學年→1, 2, 3學年	7. 左同			
8. 教育의 質的 標準 維持	8. 左同				
全般的 質的向上 圖謀	8. 左同				
9. 學舍教育의 強調 普通大學의 性格으로 早 놀 學舍中心大學으로 轉 換	9. 左同				
10. 專門人養成供給의 限界 性	10. 左同				
主要分野에 限定하여 質 的으로 向上된 教育實施	10. 專門人養成供給의 限界 性	10. 左同			
11. 學部와 專 門大學	1. 學部의 機能 1) 基本的인 一般敎養講 座	1. 科學院의 機能 1) 左同 2) 左同 3) 科學院 大學部 및 大學院 學生에게 必要한 基礎過程	1. 基本科學大學의 機能 1) 左同 2) 左同 3) 大學部 및 大學院 生에 必要한 專攻講座 提供	1. 教育機構 1) 基本學問大學의 機能 1) 學士敎育의 基礎敎 講座 提供	1. 教育機構 1) 基本學問大學의 機能 1) 學部 및 大學院에 必 要한 專攻講座 提供

내 용	제 1 次報告書(敎育分委)	제 2 次報告書(敎育分委)	小委員會修正報告書 (71.2)	企劃委員會報告書 (71.12)	最final報告書 (73.9)
	3) 학부생 전공과목의 교수제提供	전공교수제 提供	합 전공교수제 提供	제 提供	3) 전문학과 대학의 선택 교과제 提供
2. 학부교과 학과별 교수제提供	1)人文科學部 2)自然 3)社會	1)人文科學院→人文系 文系系列 7個學科 2)自然科學院→自然系 科系系列 7個學科 3)社會科學院→社會科學 系系列 9個學科	1)人文科學部→史學系 文系系列 7個學科 2)自然科學部→地質, 氣 象, 海洋學科 削除 地球科學科追加 3)社會科學部→國史, 外 國史, 新聞學科 削除 社會事業學科 追加	2.削除 3.削除 4.削除 5.削除	2. 基本學問大學生의 學科 1)人文大學→國文學科外 12個學科 2)社會大學→政治學科外 9個學科 3)自然大學→數學科外 10 個學科
3. 전공교수제→가정학과 (4年制)	3)直轄學科→家庭學科 (4年制) 4.専門大學의 組織	3)直轄學科→家庭學科, 體 育學科, 社會事業學科 4.専門學問別 大學生의 組織 매스콤大, 環境大, 創 保健大追加 計 12個大學	4.専門大學의 學科組織 行政大, 保健大 削除 家政大 追加	4.削除 5.削除	3.専門大學의 學科組織 1)經營大學→經營學科 2)工科大學→建築工學科 外 15個學科 3)教育大學→教育學科外 13個學科 4)農科大學→農學科外 16 個學科
4. 특수 전문敎育기관의 설치	5.特殊 大, 環境大 大, 行政大、保健大、 美大、師大、醫大、音大、 藥大、行政大、齒大、 音大、環境大 計 13個大學	5.左同 6.現敎育技術學校(2年制) 醫大附設 看護學科	6.大學院의 學科組織 基本科學 및 專門領域別 의 學科를 7.特殊大學院, 行政大學院 保健大學院, 新聞大學院 8.現敎育機構와의 關係 1)大學部→敎育大學은 經營大學, 新聞大學은 大學部에統合 系別豆集結	6.削除 7.削除 8.削除 9)齒科大學→齒醫學科 10)家政大學→家庭管理學 科外 2個學科	1)人文大學→國文學科外 12個學科 2)社會大學→政治學科外 9個學科 3)自然大學→數學科外 10 個學科

내 容	제 1 次 報 告 書(敎 育 分 委)	第 2 次 報 告 書(敎 育 分 委)	小 委 員 會 修 正 報 告 書 (71.9)	企 划 委 員 會 報 告 書 (71.12)	最 終 報 告 書 (73.9)
4. 上級學年進學 ①左同 ②進學系列에 있어 (1)醫, 치, 약대학은 인 자연科学院 을 받고, (2)法, 경영대학은 사회科 의兩系에서 받고 (3)自然科学院所屬學生 은 2학년 人文 및 社會科学院 所屬學生은 3학년進 學時에 事攻確定	4. 上級學年進學 ①左同 ②進學系列 (1)齒大及 산계되고 下는 左同 (2)齒大는 社會科 의兩系에서 받고 (3)自然科学院所屬學生 은 2학년 人文 및 社會科学院 所屬學生은 3학년進 學時에 事攻確定	4. 上級學年進學 ①左同 ②進學系列 (1)齒大는 산계되고 工 대학을 대체하고 工 대학을 추가, 以下는 同一	4. 上級學年進學 ①左同 ②進學系列 (1)醫大가 剷除되고 工 대학을 대체하는 경우 左同 (2)法, 경영대학은 社會科 의兩系에서 받고 (3)自然科学院所屬學生 은 2학년 人文 및 社會科学院 所屬學生은 3학년進 學時에 事攻確定	4. 上級學年進學 ①左同 ②進學系列 (1)齒大는 산계되고 工 대학을 대체하는 경우 左同 (2)法, 경영대학은 社會科 의兩系에서 받고 (3)自然科学院所屬學生 은 2학년 人文 및 社會科学院 所屬學生은 3학년進 學時에 事攻確定	4. 上級學年進學 ①左同 ②進學系列 (1)齒大는 산계되고 工 대학을 대체하는 경우 左同 (2)法, 경영대학은 社會科 의兩系에서 받고 (3)自然科学院所屬學生 은 2학년 人文 및 社會科学院 所屬學生은 3학년進 學時에 事攻確定

第 1 次報告書(教育分委) (70.10)	第 2 次報告書(教育分委) (71.2)	小委員會修正報告書 (71.9)	企劃委員會報告書 (71.12)	最 終 報 告 書 (73.9)
1. 大學院教育內容	<p>1. 학생의 규모→大幅擴張 2,000명→6,000명</p> <p>2. 학생选拔 대학부 코스의 전공 분야에 의존하지 않도록</p> <p>3. 학생학제→강화 4. 학제制度 대학원 학생을 교양과 함께 활용</p> <p>5. 학과운영 ①综合運營→重複講座 ②補充教育의機會提供 ③限定된 범위내에서 대 학원 강의 로서 認定.</p> <p>6. 학과운영 ①교育年限→2~5년 ②학위는 기본학과 전공 분야로 구별 ③대학원 졸업은 모두 전공에 實施하고 기타 학과 수료로 치부</p>	<p>1. 학생의 규모漸進的增加</p> <p>2. 左同</p> <p>3. 左同</p> <p>4. 左同</p> <p>5. 左同</p> <p>6. 左同</p>	<p>1. 學生規模→擴張한다. 2. 左同</p> <p>3. 左同</p> <p>4. 左同</p> <p>5. 左同</p> <p>6. 左同</p>	<p>1. 學生規模→5,000名 정도 로擴張 2. 左同</p> <p>3. 左同</p> <p>4. 兵役特惠→特惠措置의必 要 5. 教科課程 運營 ① ② ③ 左同 ④ ⑤ / ⑥同一領域의 學士課程 이 있는 大學院課程을 들 수 있다.</p> <p>6. 左同</p>
1. 大學院教育內容	<p>1. 左同</p> <p>2. 學生選拔→左同</p> <p>3. 左同</p> <p>4. 左同</p> <p>5. 左同</p> <p>6. 左同</p>	<p>1. 學生規模→擴張한다. 2. 左同</p> <p>3. 左同</p> <p>4. 左同</p> <p>5. 左同</p> <p>6. 左同</p>	<p>1. 學生規模→擴張한다. 2. 左同</p> <p>3. 左同</p> <p>4. 左同</p> <p>5. 左同</p> <p>6. 左同</p>	<p>1. 學生規模→擴張한다. 2. 左同</p> <p>3. 左同</p> <p>4. 左同</p> <p>5. 左同</p> <p>6. 左同</p>
1. 大學院教育內容	<p>1. 左同</p> <p>2. 左同</p> <p>3. 左同</p> <p>4. 左同</p> <p>5. 左同</p> <p>6. 左同</p>	<p>1. 學生規模→擴張한다. 2. 左同</p> <p>3. 左同</p> <p>4. 左同</p> <p>5. 左同</p> <p>6. 左同</p>	<p>1. 學生規模→擴張한다. 2. 左同</p> <p>3. 左同</p> <p>4. 左同</p> <p>5. 左同</p> <p>6. 左同</p>	<p>1. 學生規模→擴張한다. 2. 左同</p> <p>3. 左同</p> <p>4. 左同</p> <p>5. 左同</p> <p>6. 左同</p>

내 容	제 1 次 报 告 書 (教 育 分 委) (70.10)	제 2 次 报 告 書 (教 育 分 委) (71.2)	小 委 員 會 修 正 报 告 書 (71.9)	企 划 委 員 會 报 告 書 (71.12)	最 終 報 告 書 ★73.9)
	④综合試驗과 論文은 必修條件	7. 博士課程運營 ①舊制는廢止하고 新制에 따름. ②教育年限(→硕土學位取得 이후 3~6年間) ③學位	7. 博士課程運營 ①左同 ②左同 ③學位→文學, 理學, 社會科學博士로統一 ④學部에서는 哲學博士를 ⑤専門大學에서는 專門領域別 博士學位를 授與	7. 博士課程運營 ①左同 ②左同 ③學位→文學, 理學, 社會科學博士로統一 ④本校의 모든 博士學位課程은 大學院委員會에서 제시하는 基準에 到達한 것을 確제로 한다.	决定하는 方針과 基準 ④左同 7. 博士課程運營 ①左同 ②左同 ③學位→文, 理, 法, 經營, 教育, 工, 藥, 醫, 牽醫, 農學博士 ④本校의 모든 博士學位課程은 大學院委員會에서 제시하는 基準에 到達한 것을 確제로 한다.
	3. 教科課程		8. 兵役特惠→特惠의措置 가)参考	1. 左同	1. 左同
			1. 一般原則 ①初級學年→廣域의 經驗上級學年→專攻別至深化된 學習經驗 ②基礎敎養課程은 多樣性 있게 한. ③學生個人의伸張을 積極助長 ④上下級學年間의 系列上의連續性을 維持 ⑤漢의인 綜合性과 連結性을 維持	2. 編成原則 2. 編成原則	2. 編成原則 2. 編成原則

內容	第1次報告書(教育分委) (70.10)	第2次報告書(教育分委) (71.2)	小委員會修正報告書 (71.9)	企劃委員會報告書 (71.12)	最終報告書 (73.9)	
			<p>①卒業學點→140學點以上 ②基礎科目→總30學點을 必須, 自然社會科學大學 에서 各 9學點,人文科 學大學에 12學點 ③先修科目→科學院1~2 學年生에게 15學點以 內 ④專攻科目→社會,人文 科學院은 36學點,自然 科學院은 45學點以內 ⑤1學年세미나 체科學院의 1學年生에 제 3學點의 세미나 체 공 ⑥個人指導세미나 모든學生은 1,2學年 에서 每學期 1學點의 세미나 참여 ⑦優等生 프로그램 優等生에게는 大學院 科目의 受講,個人指 導,論文,세미나등으로 一般科目的一部를 대 替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許諾.</p>	<p>①卒業學點→140學點以 上 ②左同 ③左同 ④左同 ⑤削除 ⑥削除 ⑦削除</p> <p>①左同 ②基礎課程→總33學點을 必須,人文,社會,自然 系列6學點,語學9學點, 其他6學點 ③專攻課程→人文,社會 大學에서는 54學點,自 然大學에는 63學點,專 門大學은 약간의 融通 性 ④副專攻課程 ⑤人父, 社會系列에서 는 基本學點을 39學 點,副專攻學點을 21 學點 以上으로 하고 ⑥自然系에서는 專攻 學點을 49學點,副專 攻學點을 24學點이 상으로 한다. ⑦敎科課程 基本構造 (報告書 參照)</p>	<p>①左同 ②左同 ③左同 ④左同 ⑤削除 ⑥削除 ⑦削除</p> <p>①左同 ②基礎課程→總33學點을 必須,人文,社會,自然 系列6學點,語學9學點, 其他6學點 ③專攻課程→人文,社會 大學에서는 54學點,自 然大學에는 63學點,專 門大學은 약간의 融通 性 ④副專攻課程 ⑤人父, 社會系列에서 는 基本學點을 39學 點,副專攻學點을 21 學點 以上으로 하고 ⑥自然系에서는 專攻 學點을 49學點,副專 攻學點을 24學點이 상으로 한다. ⑦敎科課程 基本構造 (報告書 參照)</p>	

4. 入學試驗制度

内 容	第1次報告書(教育分委) (70.10)	第2次報告書(教育分委) (71.2)	小委員會修正報告書 (71.9)	企劃委員會報告書 (71.12)	最 終 報 告 書 (73.9)
			<p>1. 基本方針</p> <p>① 學問領域別呈 新入生 을 選拔</p> <p>② 出身高校의 成績反映</p> <p>③ 大學入學豫備考査의 合格者</p> <p>2. 學問領域別 分類 入試是 외하여</p> <p>① 人文科學領域 ② 自然〃 ③ 社會〃 ④ 農學領域 ⑤ 工學〃 ⑥ 教育〃 ⑦ 其他一美, 音大, 看護學 科 哭直轄學科는 學 科別呈 選拔</p> <p>3. 入試管理</p> <p>① 出題原則→論文體試驗 (主觀式)</p> <p>② 試驗科目→別表</p> <p>③ 採點 및 配點 ④ 采手 大學本部에서 管理</p> <p>⑤ 各科目의 配點은 領 域別呈 定함.</p> <p>4. 高等學校 成績算出 ① 學校差異 不認定 ② 高校成績을 等級化하</p>	<p>1. 基本方針</p> <p>① 左同</p> <p>② 學力評價를 基準評정 一定數는 地域配定制 呈 選拔</p> <p>③ 左同</p> <p>2. 學問領域 分類 ① 左同 ② 左同 ③ 左同 ④ 左同 ⑤ 醫齒學領域 ⑥ 教育領域 ⑦ 其他→家政, 美, 音, 看 護學科는 學科別呈 選拔</p> <p>3. 入試管理</p> <p>① 出題原則→論文體試驗 (主觀式)</p> <p>② 試驗科目→別表</p> <p>③ 採點 및 配點 ④ 采手 大學本部에서 管理</p> <p>⑤ 各科目의 配點은 領 域別呈 定함.</p> <p>4. 高等學校 成績算出 ① 學校差異 不認定 ② 高校成績을 等級化하</p>	

内 容		第1次報告書(教育分委) (70.10)	第2次報告書(教育分委) (71.2)	小委員會修正報告書 (71.9)	企劃委員會報告書 (71.12)	最最終報告書 (73.9)
5. 學生選拔節次	①豫備考査의 合格者 로 삼는다. ②検定考試合格者は 2 成績을 高校成績에 準 하여 等級화하고 索數 化한다.	고 索數화하여 加重值 로 삼는다. ③検定考試合格者は 2 成績을 高校成績에 準 하여 等級화하고 索數 化한다.	1. 管理組織의 原則 ①自治權 賦與 設置 ②總長, 1名의 首席副總 長, 4名의 副總長을 두 명으로 관리할 예정에 任命時 계속 ④豫算은 品目豫算制를 止揚하고 總括豫算制를 止揚하거 1. 左同 ①左同 ③左同 ④左同	1. 管理組織의 原則 ①自治權 賦與 設置 ②總長과 次副總 長, 4名의 副總長을 두 명으로 관리할 예정에 任命時 계속 ④豫算은 品目豫算制를 止揚하고 總括豫算制를 止揚하거 1. 左同 ①左同 ③左同 ④左同	1. 管理組織의 原則 ①自治權 賦與 設置 ②總長과 次副總 長, 4名의 副總長을 두 명으로 관리할 예정에 任命時 계속 ④豫算은 品目豫算制를 止揚하고 總括豫算制를 止揚하거 1. 左同 ①左同 ③左同 ④左同	1. 管理組織의 原則 ①自治權 賦與 設置 ②總長과 次副總 長, 4名의 副總長을 두 명으로 관리할 예정에 任命時 계속 ④豫算은 品目豫算制를 止揚하고 總括豫算制를 止揚하거 1. 左同 ①左同 ③左同 ④左同
6. 無試驗選拔制	④領域別로 成績順에 의 하여 선발하고, 第2志 望을考慮치 않는다.	④領域別로 成績順에 의 하여 선발하고, 第2志 望을考慮치 않는다.	1. 管理組織의 原則 ①左同 ②4名의 副總長→3名의 副 總長 ③教授의 校內 管理職에 身分維持 ④豫算은 品目豫算制를 止揚하고 總括豫算制를 止揚하거 1. 左同 ①左同 ③左同 ④左同	1. 管理組織의 原則 ①左同 ②總長과 次副總 長, 4名의 副總長을 두 명으로 관리할 예정에 任命時 계속 ④豫算은 品目豫算制를 止揚하고 總括豫算制를 止揚하거 1. 左同 ①左同 ③左同 ④左同	1. 管理組織의 原則 ①左同 ②總長과 次副總 長, 4名의 副總長을 두 명으로 관리할 예정에 任命時 계속 ④豫算은 品目豫算制를 止揚하고 總括豫算制를 止揚하거 1. 左同 ①左同 ③左同 ④左同	1. 管理組織의 原則 ①左同 ②總長과 次副總 長, 4名의 副總長을 두 명으로 관리할 예정에 任命時 계속 ④豫算은 品目豫算制를 止揚하고 總括豫算制를 止揚하거 1. 左同 ①左同 ③左同 ④左同

내 容	第 1 次 報 告 書 (敎 育 分 委) (70.10)	第 2 次 報 告 書 (敎 育 分 委) (71.2)	小 委 員 會 修 正 報 告 書 (71.9)	企 劃 委 員 會 報 告 書 (71.12)	最 終 報 告 書 (73.9)
로 한다.	⑤行政事務는 大學本부에 集中	⑤左同	⑤左同	⑤左同	⑤左同
⑥大學運營에 대한 教授들의 參與를 濟極勵獎	⑥左同	⑥左同	⑥左同	⑥左同	⑥左同
2. 管理組織編成의 基本方針	2. 左同	2. 左同	2. 左同	2. 左同	2. 左同
①學務會議는 두어人事豫算, 教育制度등에 한 自律性 確保	①左同	①左同	①學務會議→理事會至改稱	①左同	①左同
②總長은 學務會議가 選出하여 專任教授 過半數의 同意를 얻어 提請」을 削除	②「專任教授 過半數의 同意를 얻어 提請」을削除	②總長은 理事會가 教評議院의 同意를 얻어 提請하여 大統領이 任命	②總長은 理事會가 教評議院의 同意를 얻어 提請하여 大統領이 任命	②總長은 理事會가 教評議院의 同意를 얻어 提請하여 大統領이 任命	②總長은 理事會가 教評議院의 同意를 얻어 提請하여 大統領이 任命
③首席副總長은 對內的 인 統轄과 責任	③左同	③左同	③學校運營權을 大學本부에 集中	③左同	③左同
④大學運營의 權限을 本部에 集中	④左同	④左同	④各大學(院)의 行政事務는 大學本부에 集中	④各大學(院)의 行政事務는 大學本부에 集中	④各大學(院)의 行政事務는 大學本부에 集中
⑤首席副總長의 業務量 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학生과 行政事務의 機能은 總長과 直結시킴	⑤首席副總長의 業務量 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總長과 圖書館長 및 事務處長의 業務는 本部 事務處長의 責任下에 둔다.	⑤首席副總長의 業務量 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各副總長, 圖書館長 및 事務處長의 業務는 本部 事務處長의 責任下에 둔다.	⑤首席副總長의 業務量 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各副總長, 圖書館長 및 事務處長의 業務는 本部 事務處長의 責任下에 둔다.	⑤首席副總長은 一般職으로부터 分離시키며 獨立의 人事制度로 發展	⑤首席副總長은 一般職으로부터 分離시키며 獨立의 人事制度로 發展
⑥各大學(院)의 行政事務는 本部 事務處長의 責任下에 둔다.	⑥左同	⑥左同	⑥各大學(院), 科研所 등에 대폭 委任	⑥各副總長을 補佐하기 위한 專門委員을 수 있다.	⑥各副總長을 補佐하기 위한 專門委員을 수 있다.
⑦行政要員은 一般職으로부터 分離시키어 獨立의 人事制度로 發展	⑦左同	⑦左同	⑦各副總長을 補佐하기 위한 專門委員을 수 있다.	⑦各副總長을 補佐하기 위한 專門委員을 수 있다.	⑦各副總長을 補佐하기 위한 專門委員을 수 있다.

内 容	第1次報告書(教育分委) (70.10)	第2次報告書(教育分委) (71.2)	小委員會修正報告書 (71.9)	企劃委員會報告書 (71.12)	最終報告書 (73.9)

内 容	第 1 次報告書(教育分委) (70.10)	第 2 次報告書(教育分委) (71.2)	小委員會修正報告書 (71.9)	企劃委員會報告書 (71.12)	最 終 報 告 書 (73.9)

内 容	第1次報告書(教育分委) (70.10)	第2次報告書(教育分委) (71.12)	小委員會修正報告書 (71.9)	企劃委員會報告書 (71.12)	最終報告書 (73.9)
			<p>⑪教授評議院 ⑫構成→系列別으로 총원 50~100명의 전 任教授豆</p> <p>⑬企劃委員會 ⑭豫算委員會</p> <p>⑮人事制度審議委員會 ⑯教科課程委員會→教務 擔當副總長이 評問</p> <p>⑰大學院委員會 ⑱大學部委員會 ⑲學生指導委員會 ⑳學舍長會議→學生擔當 副總長이 評問</p> <p>⑳圖書館運營委員會→館 長이 評問</p> <p>㉑學籍室長→總長이任命 ㉒院長, 學長</p> <p>㉓任命節次→首席副總 長의 提請으로 總長 이 任命</p> <p>㉔任期→2年, 1次重任 可</p> <p>㉕所屬→首席副總 長이 報告하나 各副總長, 圖書館長의 機能上 統制을 받음</p> <p>㉖院長補, 學長補</p>	<p>⑧學長會→總長의 機關 選專 出된 50~70명의 任教授豆 ⑤任期→2年 ②企劃委員會 ③豫算委員會 ④人事制度審議委員會 ⑤教科課程委員會 ⑥大學院委員會 ⑦學士課程部委員會 ⑧學生指導委員會 ⑨大學部長 ⑩任命節次→總長이任命 ㉑院長, 學長 ㉒總長→2年, 1次重任 可 ㉓所屬→教務擔當副總 長을 通知하여 首席副 總長에게 報告 ㉔學舍長會議→學生擔當 副總長의 職務 ㉕圖書館運營委員會 ㉖學籍室長→總長이任命 ㉗部長, 學長 ㉘項斗同一 ㉙學部長補, 學長補 ㉚部長, 學長이 任命 ㉛任期→2年, 1次重任 可</p>	<p>④. 學務行政組織 및 運營 ①大學學務行政單位 (別表) ②部, 科長 ③, ⑤左同 ④, ⑥右同 ⑤企劃委員會 ⑥任期→2年, 重任可 ③學科長 ②豫算委員會 ③人事制度審議委員會 ④教科課程委員會 ⑤大學院委員會 ⑥大學部委員會 ⑦學生指導委員會 ⑧圖書館運營委員會 ⑨學籍室長→總長이任命 ㉑院長, 學長 ㉒總長이 任命 ㉓總長→2年, 1次重任 可 ㉔所屬→總長에 報告 ㉕副學長→總長이 任命 ㉖任期→2年, 1次重任可 ㉗科長→總長이 任命 ㉘任期→2年 ㉙圖書館委員會 ㉚機能→教學副總長의 諮詢 ㉛構成→教學副總長과 總長이 任命하는 教 授 10人 ㉜大學院課程委員會 ㉝機能→領土, 博士課 程에 관한 諮問 又 는 審議義決 ㉞構成→總長이 任命 한 11名의 教授豆 構成하고 常任委員 長을 둔다. ㉟學士課程委員會 ㉟機能→學士課程에 관 한 諮問 又는 審議</p>

内 容	第 1 次報告書(教育分委) (70.10)	第 2 次報告書(教育分會) (71.2)	小委員會修正報告書 (71.9)	企劃委員會報告書 (71.12)	最 終 報 告 書 (73.9)

2. 豫算制度와 그
운영

① 본교豫算是學務會議에 編成 및 執行의 最終的權限과 責任을 부여한다.

② 品目別豫算制度를 止揚하고 總括豫算制를 厚則으로 한다.

③豫算을 學科를 基本單位로 本年度別豫算과 長期豫算의 二元性을 有給助教로서 任命함을 原則

3. 行政要員

①行政要員人事體系를

②行政要員人事體系를

③行政要員人事體系를

④行政要員人事體系를

⑤行政要員人事體系를

⑥行政要員人事體系를

⑦行政要員人事體系를

⑧行政要員人事體系를

⑨行政要員人事體系를

⑩行政要員人事體系를

⑪行政要員人事體系를

⑫行政要員人事體系를

內容	第 1 決報告書(教育分委) (71.10)	小委員會修正報告書 (71.9)	企劃委員會報告書 (71.12)	最終報告書 (73.9)
	國家公務員의 人事體系呈單獨獨立 ②採用 및 補職, 免職權限을 上官에 归屬시킨다. ③行政要員의 館酬引上(職位에 相應한 充分한 報酬) ④採用對象者 ⑤主豆 大學卒業者豆시 充員 ⑥下級職員은 女子職員을 大幅起用 ⑦行政要員의 推定總 238名이 綜合督導에 望요	①圖書館의 役割, 右同 ⑥圖書館의 運營 右同	①圖書館→左同 ②圖書館의 役割 國際水準의 各種 專門誌量 完備하고, 教授와 학生의 研究資料를 提供하여 大學敎育施設의 核心 位置 ⑤圖書館의 運營 中央圖書館과 專門圖書分館을 두어 二元的組織을 有機的으로 連管	①圖書館→左同 ②學生會館→左同
4. 教育支援施設	①圖書館 ②學生會館	①圖書館設置 ②學生會館→左同	①圖書館→左同 ②學生會館→左同	①圖書館→左同 ②學生會館→左同

內 容	第1決策告白(教育分委) (70.10)	第2決策告白(教育分委) (71.2)	小委員會修正稿出當 (71.9)	企劃委員會徵告書 (71.12)	最最終報告書 (73.9)
右同	學生活動의圓滑을期하기위하여각종서비스제공을통한체육시설의多目的主競技場,5千名收容ability의體育館과其體育施設을마련하여體育向上과Sports普及	③體育施設 3萬名정도收容ability의多目的主競技場,5千名收容ability의體育館과其體育施設을마련하여體育向上과Sports普及	④電子計算所 教授의研究,學生들의실습을위하여튜터프로그램의實習을	④電子計算所 教授의研究,學生들의실습을위하여튜터프로그램의實習을	④電子計算所→左同
右同	③體育施設 3萬名정도收容ability의多目的主競技場,5千名收容ability의體育館과其體育施設을마련하여體育向上과Sports普及	③體育施設→左同	⑤講堂→大講堂과小講堂을갖는→左同	⑤講堂→左同	⑤講堂→左同
右同	④電子計算所 教授의研究,學生들의실습을위하여튜터프로그램의實習을	④電子計算所 教授의研究,學生들의실습을위하여튜터프로그램의實習을	⑥教授會館→食堂,小會議室,娛樂室등을설치	⑥教授會館→左同	⑥教授會館→左同
右同	⑤講堂→右同	⑤講堂→右同	⑦保健診療所 ④健康管理制度→健康診斷,豫防接種	⑦保健診療所→左同	⑦保健診療所→左同
右同	⑥教授會館→右同	⑥教授會館→右同	⑧博物館 ⑨國際會議場 및迎賓館	⑧削除	⑧削除
右同	⑦保健診療所 ⑧博物館	⑦保健診療所 ⑧博物館	50名을수용할수있는 同時면施設이완비된 국際會議場을마련	⑨博物館→研究擔當副總長 外廓에	⑩左同
	⑨博物館→研究擔當副總長 外廓에		⑩音樂堂 ⑪小劇場 ⑫總長公館 ⑬駐車場→체육관	⑩音樂堂 ⑪小劇場 ⑫總長公館 ⑬駐車場→체육관	⑩音樂堂 ⑪小劇場 ⑫總長公館 ⑬駐車場→체육관

내 容	제 1 決 報 告 書 (敎 育 分 委)	第 2 決 報 告 書 (敎 育 分 委) (70.10)	小 委 員 會 修 正 報 告 書 (71.9)	企 劍 委 員 會 報 告 書 (71.12)	最 終 報 告 書 (73.9)
	3,000臺를 수용 ⑨ 附設學校→師大生, 9 教 育實習과 教職員들의 子 女教育을 ⑨ 하여 ⑩ 배스킹 뮤니케이션센터	管掌下에 둘다. ⑩ 美術館→美術大學長의管 掌下에 둘다.	⑩ 美術館→左同 ⑪ 國際會議場 및 迎賓館 ⑫ 總長公館 ⑬ 배스콤센터 ⑭ 駐車場→apus 쪽 ⑮ 3,000臺 收容 ⑯ 附設學校	管掌下에 둘다. ⑩ 美術館→右同 ⑪ 國際會議場 및 迎賓館 ⑫ 總長公館 ⑬ 배스콤센터 ⑭ 駐車場→apus 쪽 ⑮ 3,000臺 收容 ⑯ 附設學校	⑩ 美術館→左同 ⑪ 國際會議場 및 迎賓館 ⑫ 總長公館 ⑬ 배스콤센터 ⑭ 駐車場→apus 쪽 ⑮ 3,000臺 收容 ⑯ 附設學校 ⑰ 繼續教育센터
三. 教授 1. 教授의 職位 와 所屬	1. 職位→講師, 助教授, 副總 長, 正教授, 講師는 2年間契約制, 助 教授는 講師의 任期滿了 後 2. 名譽教授→20年이상 本 校에 勤續하고 55세이상 으로 退職한 教授 3. 所屬→모든 教授는 專攻 又는 分野에 따라 學科 専門大學에 所屬 教授의 意見을 大學運營의 剷除	1. 職位→左同 2. 名譽教授→左同 3. 所屬→左同 削除	1. 職位→左同 2. 名譽教授→左同 3. 所屬→左同 削除	1. 職位→左同 2. 名譽教授→左同 3. 所屬→左同 削除	1. 職位→左同 2. 名譽教授→左同 3. 所屬→左同 削除
2. 教授評議院	2. 教授評議院	1. 新規任命 및 升進	1. 新規任命 小委員會의 추천에 의해 該當學科의 專任教授 在 籍過半數이상의 同意를 얻은 후, 大學人事委員會 의 決定을 거쳐 總長의	1. 新規任命 小委員會의 추천에 의해 該當學科의 專任教授 在 籍過半數이상의 同意를 얻은 후, 大學人事委員會 의 決定을 거쳐 總長의	1. 新規任命 小委員會의 추천에 의해 該當學科의 專任教授 在 籍過半數이상의 同意를 얻은 후, 大學人事委員會 의 決定을 거쳐 總長의
3. 教授의 任命	3. 教授의 任命	1. 新規任命 및 升進	1. 新規任命 小委員會의 추천에 의해 該當學科의 專任教授 在 籍過半數이상의 同意를 얻은 후, 大學人事委員會 의 決定을 거쳐 總長의	1. 新規任命 小委員會의 추천에 의해 該當學科의 專任教授 在 籍過半數이상의 同意를 얻은 후, 大學人事委員會 의 決定을 거쳐 總長의	1. 新規任命 小委員會의 추천에 의해 該當學科의 專任教授 在 籍過半數이상의 同意를 얻은 후, 大學人事委員會 의 決定을 거쳐 總長의

내 용	제 1 차 보고서(교육분과) (70.10)	제 2 차 보고서(교육분과) (71.2)	소 위원회修正報告書 (71.9)	企劃委員會報告書 (71.12)	最 終 報 告 書 (73.9)
	承認을 얻어 대統領이 任命한,契約制教授의任 命에 대한 2.昇進→昇進에 관한 評價 는該職位在職期間동안 의研究 및 教育業績을 爲主	席副總長의 承認을 얻은 事務會議議長이任命. 의任命은總長이 2.昇進→左同	Left	Left	Left
4.給與制度	國內 다른 분野의 給與基 準豐만 아니라 外國大學의 給與基準을 고려하여決定 ①集中的인 研究에 專念할 수 있도록 一定한 期間 동안 教育義務를 免除하 는 制度를 設定한다. ②國內外 大學間의 人事交 流을 고려한다.	Left	Left	Left	Left
5.休職 및 休暇	①研究教授→1年 以內로 하 며 教育義務를 免除 ②年假制度→5年間 勤續하 면 다음 1년은 모든 任 務를 免除받을 수 있는 年假制度를 두다. ③休職制度→教授의 願에 의하여 一定期間 休職할 수 있다. ④停年退職→만65세 ⑤招聘 및 交換教授制度 국内外의 大學間의 人事交 流	①研究教授→1年 以內로 하 며 教育義務를 免除 ②年假制度→5年間 勤續하 면 다음 1년은 모든 任 務를 免除받을 수 있는 年假制度를 두다. ③休職制度→教授의 願에 의하여 一定期間 休職할 수 있다. ④停年退職→만65세 ⑤招聘 및 交換教授制度 국内外의 大學間의 人事交 流	①研究教授→1年 以內로 하 며 教育義務를 免除 ②年假制度→5年間 勤續하 면 다음 1년은 모든 任 務를 免除받을 수 있는 年假制度를 두다. ③休職制度→教授의 願에 의하여 一定期間 休職할 수 있다. ④停年退職→만65세 ⑤招聘 및 交換教授制度 국内外의 大學間의 人事交 流	①研究教授→1年 以內로 하 며 教育義務를 免除 ②年假制度→5年間 勤續하 면 다음 1년은 모든 任 務를 免除받을 수 있는 年假制度를 두다. ③休職制度→教授의 願에 의하여 一定期間 休職할 수 있다. ④停年退職→만65세 ⑤招聘 및 交換教授制度 국内外의 大學間의 人事交 流	①研究教授→1年 以內로 하 며 教育義務를 免除 ②年假制度→5年間 勤續하 면 다음 1년은 모든 任 務를 免除받을 수 있는 年假制度를 두다. ③休職制度→教授의 願에 의하여 一定期間 休職할 수 있다. ④停年退職→만65세 ⑤招聘 및 交換教授制度 국内外의 大學間의 人事交 流
6.研究支援	1.研究所→각 大學내에 附 屬研究所 설치. 독립된 核算과 行政體로 운영 2.研究基金→大學校에서 지원하는 것을 原則으로	1.研究所→각 大學내에 附 屬研究所 설치. 독립된 核算과 行政體로 운영 2.研究基金→大學校에서 지원하는 것을 原則으로	1.研究所→각 大學내에 附 屬研究所 설치. 독립된 核算과 行政體로 운영 2.研究基金→大學校에서 지원하는 것을 原則으로	1.研究所→각 大學내에 附 屬研究所 설치. 독립된 核算과 行政體로 운영 2.研究基金→大學校에서 지원하는 것을 原則으로	1.研究所→각 大學내에 附 屬研究所 설치. 독립된 核算과 行政體로 운영 2.研究基金→大學校에서 지원하는 것을 原則으로

내 容	제 1 決 報 告 書 (敎 育 分 委)	第 2 決 報 告 書 (敎 育 分 委)	小 委 員 會 修 正 報 告 書	企 划 委 員 會 報 告 書	最 終 報 告 書	
	(70.10)	(71.2)	(71.9)	(71.12)	(73.9)	
7. 教授의 福祉 厚生	학비 약20억 원의 기금 창 설 1. 교수住宅→大學隣近地域 2.保健診察 및 保険 保健診察所의 大學構內 에 設置, 隅體保険制度 舉 導入 3. 子女教育→大學構내에 각 級 附屬學校는 두어 授子女의 入學優先權을 준다. 4.年金制度→擴大強化	1. 左同 2. 左同 3. 左同 4. 左同	1. 左同 2. 左同 3. 削除 3. 子女教育→大學構내에 각 級 附屬學校는 두어 授子女의 入學優先權을 준다. 4. 左同 4. 左同 4. 左同 4. 左同	1. 左同 2. 左同 3. 3. 子女教育→大學構내에 각 級 附屬學校는 두어 授子女의 入學優先權을 준다. 4. 左同 4. 左同 4. 左同 4. 左同	1. 左同 2. 左同 3. 左同 4. 左同 4. 左同 4. 左同 4. 左同 4. 左同	
8. 教育定員의 推定	四、研究	1. 研究機構 ①直轄研究所→研究擔當 副總長直屬下에 ②學內研究所→學(院)長 直屬下에 2. 研究機構의 組織 ①直轄研究所 ④所長은 總長이 任命 b)研究員은 本校 助教 授以上으로서 任命 ⑤外部 專任研究員을 둘 수 있다. ②學內研究所 ③研究員은 直轄研究	1. 研究機構 ①直轄研究所→教學督導 副總長直屬下에 ②左同 1. 研究機構 ①直轄研究所→教學督導 副總長直屬下에 ②左同 2. 研究機構의 組織 ①直轄研究所 ④所長은 總長이 任命 b)研究員은 本校 助教 授以上으로서 任命 ⑤外部 專任研究員을 둘 수 있다. ②學內研究所 ③研究員은 直轄研究	1. 研究機構 ①直轄研究所→教學督導 副總長直屬下에 ②左同 1. 研究機構 ①直轄研究所→教學督導 副總長直屬下에 ②左同 2. 研究機構의 組織 ①直轄研究所 ④所長은 總長이 任命 b)研究員은 本校 助教 授以上으로서 任命 ⑤外部 專任研究員을 둘 수 있다. ②學內研究所 ③研究員은 直轄研究	1. 研究機構 ①直轄研究所→教學督導 副總長直屬下에 ②左同 1. 研究機構 ①直轄研究所→教學督導 副總長直屬下에 ②左同 2. 研究機構의 組織 ①直轄研究所 ④所長은 總長이 任命 b)研究員은 本校 助教 授以上으로서 任命 ⑤外部 專任研究員을 둘 수 있다. ②學內研究所 ③研究員은 直轄研究	1. 研究機構 ①直轄研究所→教學督導 副總長直屬下에 ②左同 1. 研究機構 ①直轄研究所→教學督導 副總長直屬下에 ②左同 2. 研究機構의 組織 ①直轄研究所 ④所長은 總長이 任命 b)研究員은 本校 助教 授以上으로서 任命 ⑤外部 專任研究員을 둘 수 있다. ②學內研究所 ③研究員은 直轄研究

内 容	第 1 次報告書(教育分委) (70.10)	第 2 次報告書(教育分委) (71.2)	小委員會修正報告書 (71.9)	企劃委員會報告書 (71.12)	最 終 報 告 書 (73.9)

内 容	第1次報告書(教育分委) (70.10)	第2次報告書(教育分委) (71.2)	小委員會修正報告書 (71.9)	企劃委員會報告書 (71.12)	最最終報告書 (73.9)	
	1. 學生 2. 學舍制度의設 立	3. 學舍의運營 4. 學舍의維持管理는本 部에서하고 5. 研究設備 ②研究施設 ④研究施設의綜合化 ⑤電子計算所 ⑥共同準備室 모든research活動은 반드시 學術誌를通하여公表해 야함	1. 左同 2. 削除 3. 左同 4. 削除 5. 左同			

내 容	제 1 次 報 告 書 (敎 育 分 委) (70.10)	제 2 次 報 告 書 (敎 育 分 委) (71.2)	小 委 員 會 修 正 報 告 書 (71.9)	企 制 委 員 會 報 告 書 (71.12)	最 終 報 告 書 (73.9)
2. 學 生 의 獎 學 指 導, 奖 賞 及 福 祉.	1. 奨 學 指 導, 奖 賞 及 福 祉. 學 舍 内 に て 行 な る 課 目 을 以 た.	1. 奖 學 → 10個 年 計 劃 이 完 成 때 까 지 는半 以 上 이 장 학 생 이 되 어 야 한 다. 2. 所 長 → 本 校 의 優 等 生 制 2. 所 長 → 左 同 度 外 에 도 차 종 學 術 賞 과 3. 정 계 → ① 校 内 學 生 活 动 에 活 动 賞 을 제 치 하여 努 力 을 정 려 ② 學 舍 规 律 委 員 會 の 의 치 規 制 ③ 教 授 會 의 정 계 决 定 3. 學 生 指 導 의 行 政 體 制 ① 學 生 指 導 研 究 所 ② 將 來 問 题 研 究 所 ③ 各 學 舍 및 學 生 會 館 4. 學 生 醫 療 → 적 친 한 保 健 制 度 를確 立 한 다. 5. 學 生 醫 療 → 左 同	1. 奖 學 → 10個 年 計 劃 이 完 成 때 까 지 는半 以 上 이 장 학 생 이 되 어 야 한 다. 2. 所 長 → 本 校 의 優 等 生 制 2. 所 長 → 左 同 度 外 에 도 차 종 学 術 賞 과 3. 정 계 → ① 校 内 學 生 活 动 에 活 动 賞 을 제 치 하여 努 力 을 정 려 ② 學 舍 规 律 委 員 會 の 의 치 規 制 ③ 教 授 會 의 정 계 决 定 4. 學 生 指 導 ① 學 生 指 導 研 究 所 ② 將 來 問 题 研 究 所 5. 學 生 醫 療 → 左 同	1. 장 학 → 10개년 계획의 完成에 대한 기대를 우선적 으로 노력 2. 所長 → 左同 3. 정계 → ① 학생의 목적 ② 校則의 정계 4. 學生指導→學生擔當副總 長이 學生指導의 最高責 任者이며 專擔機構를 신 치 한다. 5. 學生醫療→左同	1. 学 生 指 導 ① 学 生 指 導 研 究 所 ② 将 来 問 題 研 究 所 2. 学 生 醫 療 → 左 同 3. 左 同 4. 左 同

内 容	第1次報告書(教育分委)	第2次報告書(教育分委)	小委員會修正徵告書 (71.2)	企劃委員會報告書 (71.9)	最終報告書 (73.9)
	(70.1.10)	(71.2)	(71.9)	(71.12)	
4. 其他	本校體育委員會을 설치하여综合의인 주管任務를 맡게한다.	上記한 학生活동의 指針과 計劃은 大學部學生을 為主로한 것이다. 10年計劃의 基本方針에 의거하여 大學院生의 數는 必增할것이므로 그들의 大學社會內의 位置에 관하여는 철저히 研究할必要가 있다.	1. 大學院學生 左同	1. 大學生寄宿舍→左同 2. 女學生寄宿舍를 運營	5. 首席
	2. 女學生→이들을 위한 便宣와 活動을 도우는 施設에 대하여 많은 고려가 要望된다.	3. 外國學生의 數가 增加되어 外國學生에 관한 諸問題가 檢討되어야 할것이며 그들을 위한 國際會館도 計劃되어야 한다	2. 女學生→左同 3. 外國學生→左同 4. 在日僑胞	1. 左同 2. 左同 3. 在外國民教育→左同 4. 左同	現在 文教部의 委嘱으로 在日僑胞母國留學生에豫備教育課程을 本校가 搞定하고 있으나, 이는 앞으로 本質的인 檢討가必要하다

3. 서울大 高校大學院改革報告書의 分析

71年度의 第 次와 第2次報告書에 실린 内容의 主된 骨字는 다음과 같다.

内 容	第1次報告書 (71)	第2次報告書 (72)
定員	增員	左同
他科, 他大學生의 入學	장려	左同
轉科, 轉學	許容	左同
教科課程	標準化, 學土課程과의 合同강의	科目數減縮, 其他 左同
博士學位	舊制廢止	左同
外國大學의 取得學點	認定	左同
獎學	兵役特惠, 在學生의 有給助教化 獎學 金擴充	左同, 貸與 장학금
專任教授	必要臓음	左同
學科長	學土課程과 同一人	左同
指導教授	受講指導教授와 論文指導教授 分離	左同
專攻制度	廢止	左同
入學時期	中間募集可	左同
受講科目	他科의 것을 認定	左同
受講學點	副職者의 學點制限	左同
教授別擔當學點	制限	左同
副專攻	認定	左同
大學院의 機能	大學院擔當教務處와 같음	左同
大學과의 關係	大學院時間講師制 없음	左同
特殊大學院과의 關係	大學과 同一하게 取扱	左同
圖書施設	擴張	左同
實驗施設	擴張	左同
客員研究員制 or 博士研究員制	認定	左同
外國語		碩士課程에서는 1種만, 問題銀行制度
研究職公務員 or 他大學教員		入學에 대한 特例
豫備試驗		筆記試驗復數採點, 期間 1~2週 口述試驗은 論文計劃斗 筆試의 补充
論文發表		公開發表會로 足矣. 學術誌나 單行本 不必要
博士學位의 名譽		身元照會 必要 없음

以上 第1次報告書와 第2次報告書는 같은 委員들에 의한 產物인 結果로 그 内容이 大同小異하며, 다만 第2次報告書가 더 體系가 있으며, 또 더 詳細하게 問題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上記한 企劃委員會의 教育機構組織分析委員會의 委員2人이 이 大學院의 研

究報告書作成에 관여하였으므로, 全體의 인觀點에 있어서는 서울大學校 全體의 教育機構改編을 위한 諸報告의 觀點과도一致한다고 볼 수 있다.

VI. 서울大學校教育機構改編諸案의 主要한 主張點과 採擇

1. 서울大學校教育機構改編案의 主要한 主張點

以上 서울大學校의 企劃委員會 및 大學本部의 諸報告書와 同大學院의 2個報告書의 内容을 그共通되고 主된 主張點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1) 서울大學校의 獨立：國務總理直屬과 獨立特別會計制度 및 理事會의 設置
- (2) 人文, 社會, 自然等 基本學問分野에 重點을 둔 各單大와 學科의 配列 및 一部專門大學院의 廢止.
- (3) 學士課程에 있어서의 系列別募集과 學科別定員制의 融通性
- (4) 大學院課程과 學士課程의 연계 :一般大學院에서의 專任教員의 廢止, 時間講師制의 廢止, 大學長의 大學院課程統轄, 學士課程의 學科長이 大學院課程을 統轄
- (5) 教育運營의 融通性 :他科進學, 他科學點取得
- (6) 獨立教育機關으로서의 教養課程部의 廢止
- (7) 學科長中心의 운영
- (8) 副專攻制의 採擇
- (9) 大學院課程學士의 增員
- (10) 學士課程學點의 140學點으로의 減縮
- (11) 教授의 契約制 :新規採用에 限하여, 副教授以上 停年까지 保障
- (12) 教授의 學科所屬과 專攻制統合
- (13) 在學生의 有給助教化
- (14) 行政의 本部集中化

2. 採擇과 評價

以上의 諸主張가운데서 基本學問分野의 強調나 一部專門大學院의 廢止는 日本型의 思考方式를 代辦하는 것이었으며, 서울大學校의 獨立性, 系列別募集, 教育운營의 一貫性, 舊制學位의 廢止, 學科長中心운영, 副專攻別, 大學院課程과 學士課程의 연계운영, 大學院學生의 增員, 學士課程學點의 減縮, 教授契約制, 大學院學生의 有給助教化等은 全部 美國式의 思考方式을 代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よ以上諸主張의 採擇을 보기로 하자. 첫째로 서울大學校의 獨立問題는 여러가지 條件에 實現되지 못했다. 基本學問分野의 強調나 一部專門大學院의 廉止는 서울大學校設

置令의 改正으로 實現되었다. 舊制學位는 關係法令의 改正을 通하여 實現되었다. 副專攻制도 學士課程에서는 採擇되었다. 大學院學生의 增員은 現行의 法令規定인 「大學生의 定員範圍內에서」라는 根據를 活用하여 많이 增員되었다. 教授統合은 서울大學校의 自體的인 努力에 의하여 립이 進展되었다. 教授契約制는 教育公務員法의 改正에 의하여 實現되었으나, 그 内容이 徒來의 主張과는 다르다. 系列別募集과 學士課程의 學點減縮은 實驗大學制度에 의하여 實施되고 있다. 行政의 集中化도 進行中이며, 學科長中心운영은 여러가지 與件때문에 實踐되지 못하고 있다. 助教制度의 改革은 教育法, 教育公務員法等에 亂여서 전히 實踐되지 못하고 있다.

大學院課程과 學士課程의 연계운영문제는 教育法 및 教育法施行令의 改正을 하지 않고一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法的으로 애매하고 矛盾되는 點을 많이 갖고 있고, 따라서 더 進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疑問이 생긴다. 우리가 앞에서 檢討한 우리나라의 教育關係 法令의 關係條款들을 改正하면 이문제는 더욱 順調롭게 進行될 것이다.

VI. 教育關係法令의 改正方向

첫째로 大學의 概念을 明白히 하면서 學士課程과 大學院課程의 教育이 相互 從의으로 연계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 大學, 大學校라는 것은 機關概念으로만 使用하고, 이와는 別途로 課程概念으로서 學士課程, 穩士課程, 博士課程을 두고, 機關concept과 課程concept을 兩者間에 嚴格하게 區別하여야 사용하여야 한다.

大學院이라는 用語는 그대로 남겨두되, 이것은 機關concept으로 專門大學院에만 限定하여 使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大學이란 學士課程, 穩士課程, 博士課程을 다함께 內包하는 것으로 規定하여야 한다.

碩士課程과 博士課程은 이를 合하여 大學院課程이라는 用語로 表現할 수 있게 한다.

從來의 一般大學院은 따라서 廢止되며, 大學院課程은 남게 된다. 따라서 一般大學院長은 大學院課程委員長 또는 處長이 되며, 그는 總長을 補佐하는 行政上의 補助機構로 되어야 한다.

以上과 같은 概念整理와 그에 따른 方針에 따라서 教育法 및 教育法施行令上의 大學關係條文이 大幅의으로 整理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教育法施行令 第136條에서 要求하는 博士論文의 一年內公表라는 規定을 廢止하여야 한다. 論文提出者의 自擔에 依한 出版으로 因하여 過重한 負擔을 주는 것이며, 따라서 公表의 問題는 朝國에서와 같이 學界의 自律에 맡겨야 한다.

셋째로 「大學院의 各課程에 두는 學科는 그 大學校 또는 大學에 設置된 學科種類에 限한다」는 大學院規程5條1項은 廢止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大學院課程에서 비로소 그 教育을 할 수 있는 學科를 設置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나아가서 現在 學士課程부터 設置되어 있는 많.는 學科들을 學士課程에서 廢止하고, 大學院課程만 專擔하게 할 수 있는 根據가 생긴다.

넷째로 「大學院의 學生定員은 大學 學生定員의 第2條의 定員을 超過할 수 없다」는 大學院規程第6條도 廢止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大學院課程부터 教育하는 學科를 위한 뒷받침이 물론만 아니라 社會的需要, 施設, 教員의 規模等을 감안한合理的인 定員配分이 可能하다.

더우기 現行의 學士課程學生定員은 그 根據가 희박하므로, 이를 根據로 하여 大學院課程의 定員을 規律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한 大學別分業을 감안 할때에, 一部大學은 大學院中心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學士課程學生數 보다 大學院課程學生數가 더 많아져야만 할 必要性이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위의 规定은 房害만 되지 도움은 되지 않는다.

다섯째로 大學院의 各課程在學中の 編入學, 轉入學, 轉科를 禁止한 大學院規程第15條도 廢止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教育運營의 融通性을 確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講座制, 教室制를 規定한 國立學校設置令施行細則의 第5條부터 第75條까지의 條文은 全部 刪除되어야 한다. 이 경우의 問題點은 醫齒科大學에서만 生기게 되는데 그때에도 學科의 分割이나 專攻制度로서 對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섯째로 有給助教에 관한 教育法第75條의 2號와 教育公務員法第2條의 1號의 關係規定도 改正되어야 한다.換言하면 公務員身分을 없애고 그러면서도 助教採用을 위한 安定的인 財源確保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教授의 責任時間은 過當時間으로 定한 教育法施行令第 45條 2項의 规定은 年間으로 通算하는 式으로 바꿔져야 한다.